

제 1242 호  
1986.1.30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 모 관  
편집인 : 공 보 관 이 양 유  
전화 : 731-6111-3  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
전화 : 735-3337

제	보통재정	공보재정	공보관	공보관

# 시 보

## 차 례

◎ 조 례	
제 2068 호 :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	3
제 2069 호 : 서울특별시 텃밭보전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	3
제 2070 호 :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허가조례중개정조례	5
◎ 고 시	
제 63 호 :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	19
제 64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21
제 65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22

< 이 면 계 속 >

공 람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2180

◎ 공 고

제 51 호 : 도로공사계획	22
제 52 호 : 도시계획사업 ( 도로 ) 실시계획공람	24
제 54 호 : 도시계획사업 ( 도로 및 하수도 ) 실시계획공람	28

◎ 시립대학공고

시립대학 제 1 호 : 직인개각	29
-------------------	----

◎ 사 령

**조 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6년 1월 30일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2068 호

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중개정안

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0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① "영 별표 2의 지정수량의 1/5 이상 지정수량 미만(주택난방용 제외)"을 "영 별표 2의 지정수량의 1/5 이상 지정수량 미만(일반주택, 기숙사, 의료원, 노인복지시설, 비닐

수수료 및 진료비액표

구 분	종 목	단 위	금 액	비 고
1. 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 기 타	가. 건강진단수첩	1 통	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 제 10호에서 규정한 수수료액	건강진단수첩과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
	또는 건강진단서	1 통		
	나. 결핵진단서	1 통	300 원	는 "가" 항에 "다"
	다. 기타 사실공부		300 원	

하우스의 난방용 및 농기계용 유류 취급장소 등은 제외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'86.1.20 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6년 1월 30일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2069 호

서울특별시립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 보건소 수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2 항 별표중 1 호 및 4 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구 분	종 목	단 위	금 액	비 고
4. 유료접종 수수료	<p>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서</p> <p>가. 일본뇌염 나. 홍역, 볼거리, 풍진 다. 간염 라. 장티푸스</p>	<p>1 밀리리터 혼합백신 1 회분 1 밀리리터 경구용 1 인분</p>	<p>가. 유료접종수수료는 약품의 최근수입 가격으로 한다. 단, 10 자리 이하의 금액은 1 원이상 49 원이내의 경우에 는 50 원으로 하고, 51 원이 상 99 원이내의 경우에는 100 원으로 한다.</p> <p>나.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병(의) 원의 유료접종 약품공급 가 격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 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 할 수 있다. 단, 매회 공급 총액의 10 자리이하 금액 의 산정은 "가"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다. 지정병(의)원의 접종 수수 료는 공급가격과 의료보험법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진 료수가 기준중 생물학적 제제 주사료를 가산한 금액 으로하되 일본뇌염 접종은 피하 근육주사를 적용한다. 단, 10 자리이하 금액의 산 정은 "가"항 단서의 규정에 준한다.</p>	<p>항을 더한 수수료액 으로 한다.</p>
<p>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 허가 조례중 개정 조례</p>			<p>를 이에 공포한다.</p>	<p>1986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장</p>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2070호

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허가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 허가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조 제 1항중 "규칙"을 "양곡관리법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동조 제 5항중 "등록증"을 "신고필증"으로 한다.

제 6조 제 3항중 "소규모제분업등록대장"을 "소규모제분업신고대장"으로, "소규모제분업등록교부대장"을 "소규모제분업신고필증 교부대장"으로 한다.

제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7조 (행정처분의 기준) ①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처분의 기준은 일반도정업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하고, 일반제분업(소규모제분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다.

②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순차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가공업자가 별표 2 및 별표 3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간의 기간중에 동표에서 정하는 같은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때에 한하여 적용한다.

③ 별표 2 및 별표 3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공업자가 동표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가공업자가 그 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기간중에 다른호의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일이 있는때에는 동표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분한다.

④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2이산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되,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때에는 그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 다만,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시장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나 정상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.

제 9조를 제 11조로, 제 8조를 제 10조로 하고, 제 8조 및 제 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8조 (청문)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가공업자가 (그 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출석시켜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시장은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일을 지정한 출석요구서에 별지 제 10호서식의 청문서를 첨부하여 당해 가공업자에게 송부하되, 출석일 5일전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출석요구서를 받은 가공업자는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청문서를 제출하고 청문에 응하여야 한다.

④시장은 가공업자가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할 수 있다.

제 9조 (시설점검등) 시장은 매년 2회 (4월 및 10월)에 걸쳐 양곡가공업의 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.

(별표 1) 및 (별표 2)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, (별표 3)을 별지와 신설한다.

(별지제 1호서식), (별지제 1-1호서식), (별지제 4호서식), (별지제 4-1호서식), (별지제 5호서식), (별지제 6-1호서식), (별지제 7-1호서식), (별지제 8호서식), (별지제 9호서식) 및 (별지제 10호서식)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- 1)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2) (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조례 시행전에 행한 행정처분은 이조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.

(별표 1)

일반도정업및제분업시설기준 (제 2 조제 1 항관련)

구 분	시 설 기 준
도 정 업	정미시설 ○ 원동기 : 계 10마력이상 25마력이하 ○ 원료고르는 장치 : 원료고르는 흔들채 또는 풍구 1대이상, 돌고르는 기계 또는 기구 1대이상 ○ 제현장치 : 현미기 1대이상, 왕겨풍구 1대이상, 현미분리기 1대이상 또는 만석 1벌이상 ○ 정미기 : 정미기 1대이상 ○ 건 물 : 40.5㎡이상, 대지 165㎡이상
	정맥시설 ○ 원동기 : 계 10마력이상 25마력이하 ○ 원료고르는 장치 : 돌고르는 기계 또는 기구 1대이상 ○ 정맥기 1대이상 ○ 건 물 : 40.5㎡이상, 대지 : 165㎡이상

구	분	시	설	기	준
제 분 업	규모 이상	○원동기:계 5마력이상 10마력이하 ○고르는 장치:원료고르는 시설 1벌이상, 분쇄기 1대이상, 채 1대이상 ○건 평: 30㎡이상			
	소 규모 (규모이하)	○원동기:계 5마력미만 ○고르는 장치:원료고르는 시설 1벌이상, 분쇄기 1대이상, 채 1대이상			

비고: 정미시설과 정맥시설에 있어서 원동기와 원료고르는 장치는 이를 겸용할 수 있다.

(별표 2)

일 반 도 정 업 행 정 처 분 기 준 (제 7 조 제 1 항 관 련)

위 반 사 항	처분조치근거	행 정 처 분 기 준		
		1 회 위 반	2 회 위 반	3 회 위 반
1.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양도·임대 또는 변경하거나 시설기준에 미달할 때	법제 16 조 법제 22 조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허가취소
2.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	법제 22 조	허가취소		
3. 도정도를 위반하여 도정할 때 또는 도정도를 위반한 양곡을 보관할 때	법제 17 조 법제 22 조	영업정지 3월	영업정지 6월	·
4. 정당한 사유없이 가공을 거부 또는 기피할 때	법제 22 조	·	영업정지 6월	·
5. 정부양곡을 수거, 재포장, 재도정 또는 물을 부려 도정할 때	법제 17 조 법제 22 조	·	허가취소	
6.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계속 휴업할 때	법제 22 조	허가취소		

위 반 사 항	처분조치근거	행 정 처 분 기 준		
		1 회 위 반	2 회 위 반	3 회 위 반
7. 휴업한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때	법제 16 조 법제 22 조	경 고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
8. 조사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	법제 19 조 법제 22 조	영업정지 3월	허 가 취소	
9. 가공생산품에 표전을 첨부 하지 아니한때	법제 17 조 법제 22 조	경 고	영업정지 3월	영업정지 6월
10. 가공시설의 개선명령을 받고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때	법제 17 조 법제 22 조	영업정지 1월		허 가 취소
11. 보고명령, 기타 법령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법제 19 조 법제 22 조	경 고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

(별표 3)

일반제분업행정처분기준 (제 7 조제 1 항관련)

위 반 사 항	처분조치근거	행 정 처 분 기 준		
		1 회 위 반	2 회 위 반	3 회 위 반
1.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,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양도, 임대 또는 변경하거나 시설기준에 미달한때	법제 16 조 법제 22 조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허 가 취소
2.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때	법제 22 조	허 가 취소		
3.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	법제 22 조	허 가 취소		



위 반 사 항	처분조치근거	행 정 처 분 기 준		
		1 회 위 반	2 회 위 반	3 회 위 반
4. 휴업한 날로부터 15 일 이 내에 휴업신고를 하지 아 니한 때	법 제 16 조 법 제 22 조	경 고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
5. 영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 지 아니한 때	법 제 16 조 법 제 22 조	허 가 취소		
6. 정당한 사유없이 가공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	법 제 22 조	경 고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
7. 가공시설의 개선명령을 받고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	법 제 17 조 법 제 22 조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허 가 취소
8. 규모이하 신고업소가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규모 이상(동력총계 5 마력이상) 으로 시설을 증설한 때	법 제 16 조 법 제 22 조	영업정지 3월	영업정지 6월	
9. 조사공무원의 조사를 거 부, 방해 또는 기피한 때	법 제 19 조 법 제 22 조	.	허 가 취소	
10.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업종을 위반하여 다른 영 업행위를 한 때	법 제 16 조 법 제 22 조	경 고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
11. 보고명령, 기타 법령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때	법 제 19 조 법 제 22 조	.	.	.

\* 비고 : 행정처분중 허가취소는 규모이상의 제분공장에만 적용한다.

(별지제 1 호서식)									
<u>양곡가공업 허가 신청서</u>								처리기간	
								15 일	
신청인	성명				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					전화번호			
설치공장	업체명								
	설치장소					업체구분			
	업종					부지면적			
건물	건물명	건물구조	동수	면적 (㎡)	수용능력 (㎡)				
	공장								
	창고								
가공능력 (1일시 간기준)	구분	정미 (%)	정맥 (%)	압맥 (%)	제분 (%)	제조 (%)	비고		
	제품								
	원료								
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 허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				
년 월 일 귀하 신청인 (인)									
첨부서류								수수료	
1. 사업계획서 (별지제 2 호서식) 1부 2. 공장설계평면도 1부 3. 대지,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.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 (별지제 5 호서식) 1부								3,400 원	

(별지제 1-1 호서식)								
<u>소 규모 제분업 신고서</u>							처리기간 15 일	
신고인	성명			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				전화번호			
설치업소	설치장소							
	업체명							
	업종							
건물	건물구조	건물용도	면적 (㎡)			비고		
가공능력 (1일시 간기준)	구분	품목	제분 (%)	( )	( )	( )	( )	비고
		계 품						
		원 료						
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	시설명	종별	형식	규격	대수	마력	기타부대시설	
준공년월일								
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 허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제 분업 신고를 위 내용과 같이 합니다.  년 월 일  신고인 <span style="float: right;">①</span>  귀 하								

30-12 제 1242 호

시

보

1986.1.30

(별지제 4 호서식)		양곡가공시설(양도, 임대, 시설변경, 장소이전) 승인신청서	처리기간 10 일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전화번호
	업 체 명	허가번호	허가일자
변경 사유	내 용	변 경 전	변 경 후
시 공 예 정 기 간			
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 허가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. 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             년    월    일              신청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             귀하           </div>			
첨 부 서 류 1)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각 1부 2) 허가증(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.)			수 수 료  1,000 원

( 별지제 4-1 호서식 )

소규모제분업(양도, 임대, 시설변경, 장소이전등) 신고서

처 리 기 간

10 일

신 고 인	성 명		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		전 화 번 호		
	상 호		신고번호		신고일자	
변경 사유	내 용	변 경 전		변 경 후		

시 공 예 정 기 간 . . . . .

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 허가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내용 및  
첨부서류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①

귀하

첨 부 서 류

- 1)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각  
1부 (인감증명서 제외)
- 2) 신고필증



(별지제 6-1 호서식)

조사년월일:

조사자: 직

성명

소규모제분업신고대장

규 모 구 분		신고번호				
업 종		소재지				
설치년월일		상 호				
신고년월일		성 명				
변경후	상 호	변경년월일				
	성 명					
변경후	상 호	변경년월일				
	성 명					
주요 기계 시설 상황	종	별	형 식	규 격	대 수	비 고
적  요						

( 별지제 7-1 호서식 )

소규모제분업신고필증교부대장

계 인	신 고 번호	신 고 월 일	업 체 소재지	장 호	대표자 성 명	신 고 업 종	주 요 시 설						확 인				
							종 별	형 식	규 격	대 수	종 별	형 식	규 격	대 수	담 당 자	수 명 자	



(별지제 8 호서식)						
<u>소규모제분업시설공사완료신고서</u>						처 리 기 간
						3 일
신 고 인	성 명					
	주 소					
	상 호					
설치근거	신고번호				신고년월일	
	시공기간					
시 설 장 소						
건 물	건물구조	건물용도	건 형		비 고	
가공능력 (1일시 간기준)	품목 구분	제 분	( )	( )	( )	( ) 비 고
	재 품					
	원 료					
시 공 사 항						
서울특별시 양프가공업 허가조례 제 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 규모 제분업 시설준공을 신고합니다.						
년 월 일 신고인						
귀하						



(별지제 10 호서식)

청 문 서

- 1. 출석요구서 번호 :
- 2.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 유·무 :
- 3. 소명요지 (의견이 있을때) :
- 4. 기 타

년 월 일  
가공업자 (대리인) (인)

시장 귀하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3호

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호(74.3.2)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서울시 고시 제 199호(85.5.6)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된 개봉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(사업기간변경)하였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코인다.

1986.1.30

서울특별시장

- 1) 사업시행지  
구로구개봉동 68의 2에서 38의 45  
구로구개봉동 38의 45에서 20의 5
- 2) 사업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 
(도로 및 하수도)시행변경인가
- 3) 사업규모 : 도로개설 B=8 L=265  
하수도 (D=700%) L=310
- 4)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구로구청장)
- 5)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
당초 : 85.2.2 - 85. 8. 2  
변경 : 85.2.2 - 86.12.31
- 6)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: 별첨
- 7)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·성명 : 별첨 토지조서 및 건물조서 (별항)

첨부 : 토지 및 건물조서 1부

토 지 조 서									
번 호	소재지		지 목	지 적	면적	소유자주소성명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
	동명	지번				관계인	주소성명		
1	개봉동	20-6	답	399	399	동작구노량진동 225-55	김 봉 권	가처분	
2	"	20-4	답	561	561	구로구개봉동 44	김 은 수		
3	"	22-1	전	6	6	구로구개봉동 44	"		
4	"	산 2-7	임	154	154	강서구신월동 9-20 부천시소사동 36-4	김 영 주 광산김씨창중 의필피중		
5	"	24-1	전	87	87	구로구개봉동 44-9	김 범 수		
6	"	27-4	답	261	261/132	구로구개봉동 44	김 은 수		
7	"	33-109	대	90	90	구로구개봉동 33-109	박 상 규		
8	"	38-66	답	42	42	구로구개봉동 44	김 은 수		
9	"	38-46	답	919	919	구로구개봉동 44	김 은 수		
10	"	40-2	답	99	99	강남구도곡제 2아파트 42동 401호	정 동 보		
11	"	56-9	대	47	47	구로구개봉동 56-1	송 금 성		
12	"	54-1	임	272	272	구로구개봉동 156-5	선풍산업(주)		국세채납 의한납품
13	"	50-24	전	12	12	구로구개봉동 156-5	선풍산업(주) 국(영등포 세무서)		
14	"	53-1	전	7	7	구로구개봉동 156-5	선풍산업(주) 국(영등포 세무서)		
15	"	52-1	전	277	277	구로구개봉동 44	김 은 수		
16	"	41-1	대	1	1	개봉동 42-1 개봉동 131-4 천남완도군완도읍가용리 9 개봉동 40-1	최 성 대 개봉 1동 새마을금고 추 정 용 박 석 순		근저당권 설정

번 호	소재지		지 목	지 적	편입 면적	소유자주소성명	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	동명	지번				관계인주소성명			
						용산구이태원동 141-5 개봉동 40-1 " " 여수시중앙동 567 개봉동 40-1 연립주택 103 호 중구신당동산 36 개봉동 40-1 영등포동 2 가 440 신길동 253-194	이영식 구자범 한환화 김창섭 허권길 김원배 김홍배 이춘대 허백부 김수부		가처분

건 물 조 서

번 호	소재지		물건의 종류	구조및 규격	수량 (㎡)	소유자주소성명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	동명	지번				관계인주소성명		
1	개봉동	56-1	주택	세멘트 벽외 벽	22.00	개봉동 56-1	송금성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4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  
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 
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규  
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6.1.30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1. 사업명 :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

승인

2. 사업주체 : 진보주택(주)  
대표 김 송 환
3.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규모  
가. 강동구거여동 347-2 호  
나. 대지면적 : 901.39  
다. 용 도 : 연립주택  
라. 규 모 : 3층 1동 18 세대 및  
부대부리시설  
마. 건축연면적 : 1,060.56
4. 사업시행기간 : 1986.2 - 1986.9  
첨부 : 1) 설계도서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5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6.1.30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- 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- 2. 사업주체 :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 275-1

㈜ 미전주택 대표 이 석 순

- 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. 위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83-1

- 나. 면적 : 1,503.50
- 다. 규모 : 연립주택 3 층 1 동 30 세대
- 4. 사업시행기간 : 1986.1-1986.7.30

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1 호

도로공사계획공고

- 1. 도로법시행령 제 24 조의 3 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 17 조의 2 항에 의거 도로공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.
- 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 열람케 한다.

1986.1.30

서울특별시장

아 래

번호	노선명	공사구간	공사명	시행자	시행기간
1	서울특별시	수유동 472-143 번지간	수유동 472-143 포장공사	도봉구청	86.2- 5.30
2	"	번동 454의39-455 의13	번 1 동 469-454 주변포장공사	"	"
3	"	상계동 150 의 8-140번지간	신상계국교진입로포장공사	"	"
4	"	번동 367 의 1-362 간	한천로보도조성공사	"	"
5	"	방학동 687-689 간	방학동 688 도로개설공사	"	"
6	"	중계동 417 의 61-440 ~ 35 번지간	중계동양지마을포장공사	"	"
7	"	월계동 270-274 간	월계동인덕단지내포장공사	"	"
8	"	상계동 600-173 번지간	동열로-수암교간도로개설공사	"	86.3-10.30
9	"	방학 724-725 간	방학동 725 주변도로정비공사	"	86.2- 6.30

번호	노선명	공 사 구 간	공 사 명	시행자	시행기간
10	서울특별시	방학 687-688 간	방학동 688 주변도로정비 공사	도봉구청	86.2-6.30
11	"	방학 668-680 간	방학동 699 주변도로정비 공사	"	"
12	"	방학 713-718 간	방학동 713-718 주변도로 정비공사	"	"
13	"	미아 65의 14-65의 11 간	미아동 65번지 도로개설 공사	"	86.2-12.31
14	"	월계 1 동 59의 3-73의 6 간	월계 1 동 68 주변도로개설 공사	"	"
15	"	상계동 181의 14-389의 331 간	상계동 387-189 주변포장 공사	"	"
16	"	상계동 449 의 37-167의 8번지간	계상국교진입로개설공사	"	"
17	"	수유동 410의 268-409의 98번지간	4.19 -한신대간 도로 개설공사	"	"
18	"	상계 1116, 364, 389	상계동지역하수도공사	"	86.2-5.30
19	"	도봉동 582, 583, 607	도봉방학지역하수도공사	"	"
20	"	방학동 690, 630-631 간 월계 581, 602 공릉동 379-380. 26	월계, 공릉지역하수도공사	"	"
21	"	쌍문동 81	정의여고주변하수도공사	"	"
22	"	쌍문동 411, 368, 315	쌍문동지배하수도공사	"	"
23	"	수유동 360, 391, 240, 259 290-279, 568	수유동지역하수도공사	"	"
24	"	미아동 1261, 476, 860, 1265, 852, 767, 332	미아동지역하수도공사	"	"
25	"	중계 154-172번지간 산 104, 하계 184, 185	중계, 하계 지역하수도공사	"	"
26	"	공릉동 400	공대천상류복개공사	"	"
27	"	미아동 233, 791, 75, 84, 102, 155	미아 1, 2, 3, 4 지역하수 도공사	"	"
28	"	번동 411-428, 창동 657, 452, 524, 487	번, 창동지역하수도공사	"	"

**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2호**  
**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**

1.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적승인한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항 및 동 시행령 제 27조 2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한다.  
 2. 토지(건물)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  
 3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, 본 사업시행에 다른 의견서는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기 바란다.

1986.1.31  
 서울특별시장

- 공 략 요 지 -

가. 사업개요

사업시행지	사업종류및 사업명칭	규 모	착 공	준 공	결정고시일자	지정고시일자
수유동 410-268 외 22필지	도시계획사업 (도로) 4.19-한신대학간도로 개설공사	B= 20 m L=240 m	'86. 1.31	'86. 12.31	건설부고시 2493호 (66.6.21)	건설부고시 2948호 (77.12.17)
미아동 640-6외 31필지	도시계획사업 (도로) 미아동 645-1264 도로 개설공사	B= 6 m L=140 m	"	"	서울특별시고시 105호 (83.2.24)	서울특별시고시 174호 (83.3.24)
수유동 303-6 외 3필지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수유동 536 외 1개소포장공사	B= 6 m L= 25 m	'85. 12.26	'86. 12.31	서울특별시고시 12호 (71.3.5)	서울특별시고시 12호 (71.3.5)

나. 공사사업의시행자: 서울특별시장  
 다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(건물) 조서: 별첨 토지(건물)조서  
 라. 위치도및계획평면도: 생략  
 마. 공람장소: 도봉구청 토목과 및

건설관리과  
 바. 공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
 사.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과에 문의 바란다.



토 지 조 서					
( 4.19 - 한신대간 도로개설 공사 )					
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현입면적 (㎡)	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	소유권 의 권리명세
수유동410-268	하천	2,411	1,480	국유지	미분할
" 275	도로	844	844	성북구동소문동 6 가 174 홍병근외 6 인	
" 244	대	82	82	용산구이촌동 302-28 장영수의 1 인	
" 245	"	90	90	수유동 410-43 이홍중의 1 인	
" 246	"	102	102	" 246-2 안중호	
" 247	"	127	127	" 400-8 전중문	
" 248	"	129	129	도봉구 124-11 노병무	
" 249	"	108	108	수유동 410-47 박명수	
" 250	"	89	89	" 391-40 김평태	
" 259	"	85	85	경기도수원시고등동 94-1 이정산	
" 260	"	28	28	수유동 410-50 박영일	
" 251	"	109	109	동대문구중화동 330-14 김수복	
" 252	"	76	76	수유동 410-35 이경덕	
" 253	"	91	91	" 410-34 임기혁	
" 254	"	81	81	경기도용인군남사면아곡리 234-2 황순만	
" 255	"	54	54	수유동 410-32 김상영	
" 256	"	64	64	" 435-23 임영태	
" 257	"	76	76	성북구동소문동 6 가 174	
" 258	"	77	77	수유동 410-29 홍경섭	
" 261	"	82	82	" 410-28 좌영실	
수유동삼111-9	임야	63	63	국유지	
" 111-11	"	328	328	성북구정능동 716-41 임사갑	
" 409-98	대	789	789	국유지	

• 현입면적은 도상 산출한 것임

건 물 조 서					
( 4.19~한신대간 도로개설 공사 )					
지 번	건물면적	전입면적 (㎡)	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	소유권 관리명세	
수유동 410-28		21	곽영실		
" 29		14.5	홍경섭		
" 30		7.5	홍병근		
" 31		7	임영대		
" 32		3	민병찬		
" 35		4.5	이경덕		
" 43		4	이계인의 1인		
" 45		1	전종내		
" 46		17	노남규		
" 47		2.5	박명수		
" 409의 98		320	우이국교		
" 410-268		6	국립자심학원		
* 단 전입면적은 도상 산출한 것임					
토 지 조 서					
( 미아동 645-1264 도로 개설공사 )					
순번	지 번	지목	지적	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	소유권 관리명세
1	미아동 640-6	답	36	성북구동선동 2 가 16	유형열
2	" 79	대	14	미아동 791-2651	황명철외 2
3	" 80	도	5	" 1-25	남일현
4	" 641-1	대	11	" 1264-65	최재원
5	" 2	"	10	" 1264-65	"
6	" 642-10	"	5	영등포구도림동 141-39	홍종식
7	" 645-99	"	66	미아동 693	김형식
8	" 124	도	36	" 518-3	심하준

순번	지 번	지목	지적	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9	미아동 645-135	대	2	강서구신월 169-1 안수철	
10	" 136	"	2	(신월 연립가동 101호) 강서구신월 169-1	
11	" 137	"	15	성북구길음 623-7 이상달	
12	" 1264-23	"	36	서울특별시	
13	" 29	"	58	미아 637-195 유도이	
14	" 30	도	3	서울특별시	
15	" 40	대	66	미아 1264-40 원용직	
16	" 45	"	36	" 637-188 유용택	
17	" 47	"	13	서울특별시	
18	" 54	"	6	"	
19	" 250	"	2	미아 637-202 정동수	
20	" 251	"	10	서울특별시	
21	" 252	"	40	미아 1264-28 권태수	
22	" 255	"	76	" 1264-255 김기호	
23	" 257	"	63	서울특별시	
24	" 258	"	3	미아 1264-35 가영자	
25	" 259	"	3	" 36 안승덕	
26	" 270	"	11	" 19 이정우	
27	" 271	"	6	" 21 김재준	
28	" 272	"	18	" 637-202 정동수	
29	" 273	"	1	" 1264-28 권태수	
30	" 275	"	2	서울특별시	
31	" 276	도	22	"	
32	" 277	대	4	미아 1264-26 김태수	

토 지 조 서						
(수유동 536 외 1 개소포장공사)						
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면 입 면 적 (㎡)	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	소 유 권 이 외 명 세	
수유동 303-6	대	49	49	수유동 303-1	허남섭	
" " 5	"	54	54	"	"	
" " 13	"	9	9	수유동 357	신현배	
" " 7	"	36	36	" 303-2	양성규	
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54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(도로 및 하수도) 실시 계획공람공고</p> <p>1. 서울시공고제 160 호 ( '76.4.15 ) 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 계획시설(도로 및 하수도)에 대 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 에게 보인다.</p> <p>2. 관계 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며,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 하 고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 로 갈음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6.1.30 서울특별시장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 공 랑 개 요 ”</p> <p>1 ) 사업시행지 : 구로구개봉동 132 주 변</p> <p>2 )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(도로 및 하수도)</p> <p>3 ) 사업규모 도로개설 B = 6~8 L = 140 하수도 ( D = 450 % )</p> <p>4 )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 구로구청장 )</p> <p>5 )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'86. 1. . ~ '86.12.31</p> <p>6 )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건물 및 토지조서</p> <p>7 )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 토지조서 건물조서 ( 별첨 )</p> <p>첨부 토지 및 건물조서 1부. 끝</p>
---	---

토 지 조 서								
(토지) 개봉1동 132의 49~54포장공사								
번호	소재지	지 번	구조	주용도	공부 면적	전입 면적	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1	개봉동	84-1	담		221㎡	220㎡	종로구필운동 270-5	
2	"	83-10	담		159	159	문흥석외 2인	
3	"	416-40	내		139	2	중구회현동 117-2 이준홍	
		416-169					구로구개봉동 416-40	김경삼
계		3필지			519㎡	381㎡		
(건물)								
번호	소재지	지 번	구조	주용도	공부 면적	전입 면적	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1	개봉동	416-40	세면 벽돌조 평옥개 (연외조)		지층 7.90㎡	1㎡	개봉동 416-40 김경삼	
					1층 75.97	1		
					2층 72.23	1		
계					156.10	3㎡		

**시립대학공고**

◎시립대학제 1호





직.인 개 각

서울시립대학설치조례 제 15 조 (부속, 부설기관) 제 2 항 및 서울시립대학

학사 내규 제 89 조 (제 증명발급절차) 제 3 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인을 신조하여 '86.3.1부터 사용코자 관인 규정 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86. 1. 30

서울시립대학장

인 명						
공인명	서울시립대학부속 박물관장인 (직인)	(계인)	서울시립대학교무 처장 (직인)	(계인)		
<b>사 령</b>						
◎ 1986년 1월 29 일자				형제 34 호		
성 명	발 령 사 항		현 부 서	직 급		
조 성 재	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('86.1.1-'86.1.31)		재개발과	기방전측기사		
◎ 1986년 1월 31 일자				제 35 호		
성 명	발 령 사 항		현 부 서	직 위	직 급	
김 상 운	목동지구개발사업소	설비공사과장	선유수원지사사무소	소장	지방공업기정	
김 운 봉	선유수원지사사무소	지방공업기정	총 무 과	관리계장	지방전기기과	
소 속	직 위	직 급	성 명	사 망 일 자	사 망 사 유	변 직 일 자
자동차관리 사업소	검사 과장	지방기계 기 과	김 윤 일	'86.1.26 23:50	호흡부전심부전	'86.1.27
서울특별시장						